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4-20호

가락2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주거재생과-8308(2016. 5. 24.)호로 조합설립인가 처리통보 한 가락2 지역주택조합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주택법 제96조(청문) 제2항에 따라 2024. 2. 7.일자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결과에 따라 주택법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제2항 규정에 의거 가락2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송 파 구 청 장

1. 조합설립인가 취소내역

처분내용	조합명	인가일자	대표자	사업위치	취소 근거	취소일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가락2 지역주택조합	2016. 5. 24.	조합장 조상호	송파구 가락동 32번지 일대	주택법 제14조 제2항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2024. 2. 16.

2. 취소사유 및 법적근거

- 주택법 제14조 제2항 “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함.

3. 조합설립인가필증 및 변경인가필증 회수에 관한 사항

- 회수기간 : 2024. 2. 19.~2024. 2. 29.
- 회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장소 : 송파구청 6층 주택사업과(송파구 올림픽로 326)

4. 조합원에 대한 개별통지 : 본고시로 대신함**5. 취소에 대한 불복**

-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주택사업과(☎02-2147-2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